# 파트너사 공정거래 가이드라인

- I.개요
- Ⅱ. 파트너사 선정 및 운영
- Ⅲ. 판촉행사 진행
- IV. 매장 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/보상
- V. 판촉사원 파견
- VI. 반품의 기준 및 절차
- VII.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

# I. 개요 (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 지침을 중심으로 상세 안내)

#### 1. 거래의 정의

| 구분   | 세부 내용  |
|------|--|
| 특약매입 | · 대규모유통업자가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 후,<br>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하는 거래           |
| 직매입  | · 대규모유통업자가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   |
| 임대   | · 파트너사(임차인)이 파트너사 소유의 상품을 파트너사의 책임 하에 판매하고 발생한<br>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임대료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|
| 위수탁  | · 대규모유통업자가 파트너사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 후,<br>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하는 거래      |

<sup>※</sup> 임대차 및 위수탁거래는 상품의 소유자가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「2. 부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」은 적용되지 않음

#### 2. 부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

☑ 상품의 소유관계를 전제로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 명확화 및 파트너사에 부당한 비용 전가 금지 (단, 비용의 성격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세부 내용   | 부담 주체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품 입고<br>및 관리 단계      | · 매입처리된 상품에 대한 재산보장보험 비용 · 매입처리된 상품 보관 비용 (창고등) · 매입처리된 상품에 대한 멸실·훼손 비용 ※ 단, 파트너사에 귀책사유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· 롯데 주관 광고 비용 (전단, DM, SNS 홍보, POP, 우드락 등)<br>· 롯데 주관 판매촉진 활동 비용 (상품권/사은품행사, 무이자 할부 등)  | 롯데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고 및<br>판매촉진<br>활동 단계 | · 롯데-개별 파트너사 공동판촉행사 비용 (상품권/사은행사, 문화행사 등)<br>· 롯데-개별 파트너사 가격할인 방식의 공동판촉행사시 가격할인분  | 롯데 50% 이상<br>비용 부담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· 롯데 주관 테마/프로모션 관련 파트너사에 대해 공개모집 사전고지 후<br>이를 참고하여 파트너사가 진행하는 자발적이고 차별화된 판매촉진 행사 비용<br>· 파트너사 주관 자발적이고 차별화된 판매촉진 행사 비용  | 파트너사<br>(비용분담비율<br>협의가능) |
| 매장 운영<br>및 관리 단계      | ・매장 인테리어 비용 中 기초시설 공사 비용 (바닥, 조명, 벽체 등) ※ 파트너사 고유 사양에 의한 기초 공사인 경우, 파트너사 비용 부담 ・롯데 사유 (MD개편, 매장 리뉴얼 등)의 불리한 매장이동으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・롯데가 파견 요청한 판촉사원 비용 (판촉사원 파견요구 및 강요 행위 금지) ※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요구 후, 파트너사에 인건비 부담시키는 경우 법 위반 ・매장관리 비용 (전기료, 가스료, PDA/POS 등 대금결제 장비 사용료 등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. 강제성 판단기준

| 구 분  | 세부 내용   |
|------|---|
| 판단기준 | · 자발적인 참여(희망)의사 여부, 불참시 제재수단 존부 및 불이익 부여 여부       |
| 고려사항 | · 사안의 성격, 거래상 우월적 지위 정도, 거래의존도, 거래관계 지속성, 거래상품 특성 |

# Ⅱ. 파트너사 선정 및 운영

#### ◎ 파트너사 선정 · 운영 기준 및 절차

| 구 분          | 세부 내용   |  |
|--------------|---|--|
| 입 점          | · 입점 상담 단계에서 롯데가 파트너사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|  |
| 마진율/<br>임대료율 | · 롯데 또는 양당사자가 계약기간 중 마진율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금지<br>① 롯데-파트너사 중 마진율/임대료율 조정을 희망하는 당사자가<br>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거래조건 변경 관련 서면 공문 발송<br>② 양사간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계약체결<br>③ 재계약시점부터 조정 마진율 적용   |  |
| 조정           | <ul> <li>※ 단,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거래조건 변경 관련 서면 공문 발송 후 (미발송시 동일조건 자동연장)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거래조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</li> <li>1) 기존 조건대로 재계약 체결 (사전 공문 발송한 내용 포함하여 협의 진행경과 등 특약사항으로 기재)</li> <li>2) 조건 합의 완료 시 변경계약 체결 (협의 관련 파트너사 공문 등 첨부)</li> <li>* 변경 조건은 소급 적용 불가</li> </ul> |  |
|              | ① 파트너사 사유로 인한 퇴점 - 경영 악화, 매출부진 등으로 인한 자진철수, B/D 사업 종료 등 - 파트너사가 진정한 의사를 기재한 공문을 롯데에 사전 전달 필요 * 필수 기재 사항: 구체적인 퇴점요청 사유, 직인, 공문 발송일자  |  |
|              | ②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 발생으로 인한 퇴점<br>- 대외이미지 손상, 공정거래법 위반 등   |  |
| 퇴 점<br>      | ③ 계약기간 만료 퇴점<br>- 롯데-파트너사 중 계약기간 만료 퇴점을 희망하는 당사자가<br>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갱신거절(재계약 미진행/거부) 관련 공문을 상대방에게 전달  |  |
|              | ④ 특약매입 거래 파트너사 정기MD 평가 연속 2회 하위 20% 해당으로 인한 퇴점 - 1차 하위 20% 해당 시 롯데가 파트너사에 「관심 브랜드 통보 공문」 발송 - 2차 (1차 하위통보직후평가) 하위 20% 해당 시 롯데가 파트너사에 「거래중지 통보 공문」 발송 - 양사간 거래중지 합의서 체결  |  |

# III. **판촉행사 진행** (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)

#### 1. 판촉행사의 정의

☑ 명칭/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나 활동

#### 2. 판촉행사의 유형

| 구분          | 예 人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|
| 롯데 주관 행사    | · 상품권 사은행사 (브랜드 합산), 무료 감사품 증정 등       |
| 공동판촉행사      | ·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5:5 증정행사 등               |
| 파트너사 자발적 행사 | · 감사제 등 파트너사 개별 테마행사, 파트너사 창립행사, 고별전 등 |

#### 3. 판촉행사 유형별 분담 기준

☑ 대규모유통업자는 파트너사에게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 또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

| 구   | ·분   | 비용부담   | 세부 내용  |  |
|---|--|--|--|--|
| 롯데주   | 관행사  | 롯데   | ・파트너사 비용 소요 없음 / 롯데 주관 광고선전비용 등 롯데 100% 부담   |  |
| 공동판촉행사 목적 하에 판촉행사실비를 추가 지출하고, 그 비용을 상호 분담하기로 합의하여 : 해당 파트너사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파트너사 비용 부담 금지 : 행사시작일 전까지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체결 필수 및 판촉비의 50% 이상 롯데 |  | <ul> <li>롯데-파트너사가 공동으로 기간을 정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<br/>목적 하에 판촉행사 실비를 추가 지출하고, 그 비용을 상호 분담하기로 합의하여 진행</li> <li>해당 파트너사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파트너사 비용 부담 금지</li> <li>행사시작일 전까지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체결 필수 및 판촉비의 50% 이상 롯데 부담<br/>- 행사명/유형, 기간, 행사 세부내역(사용용도), 예상비용, 분담비율/액수 등 사전 서면 약정</li> </ul> |  |  |
| 파트너사<br>지발적<br>행사   | 롯데     롯데     (MD본부홈페이지, 공문 발송 등)       롯데     롯데     ② 파트너사가 이를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진행 의사(공문)을 롯데에       공개모집     ③ 파트너사의 자체 판촉행사 비용은 파트너사가 부담 (분담비율별도 협열       사건고지     때트너사 지발적 행사 기발적 행사 기반도 보다는 기반도 되었다는 기반도 보다는 기반 |  | ① 롯데가 '롯데 주관 테마/프로모션' 관련 파트너사에 공개모집 사전고지 후 (MD본부 홈페이지, 공문 발송 등) ② 파트너사가 이를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진행 의사(공문)을 롯데에 전달 시 ③ 파트너사의 자체 판촉행사 비용은 파트너사가 부담 (분담비율 별도 협의 가능) · 롯데가 파트너사 자체 판촉행사 진행을 직/간접적으로 독려 및 강요하는 행위 금지 · 롯데가 파트너사 자체 판촉행사 진행 내용에 대한 변경 요청 등 추가 협의 금지 - 정기세일 테마, 롯데주관감사품 지급 행사, 월간 상품권 행사 등 공개모집 사전고지 |  |
|   | 파트너사<br>요청   | 파트너사   | · 파트너사가 자발적인 판촉행사를 결정하여 롯데에 협조 및 광고 요청하는 경우,<br>파트너사의 자체 판촉행사 비용은 파트너사가 부담 (분담비율 별도 협의 가능)<br>- 감사제 등 파트너사 개별 테마행사, 파트너사 창립행사, 고별전 등   |  |

# IV. 매장 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/보상 (매장운영 및관리)

#### 1. 매장 이동 및 변경 기준

☑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파트너사의 매장 위치 · 면적 ·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

#### 2. 인테리어 관련 비용의 유형

| 구분         | 세부 내용   |
|------------|---|
| 기초시설공사 비용  | · 파트너사 입점 시 설비 추가없이 단순 집기 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<br>롯데 사양으로 천장, 바닥, 벽체, 전기배선, 수도, 기둥 등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<br>· 롯데 100% 비용부담 (단, 파트너사 사양으로 변경할 경우 파트너사 비용부담)         |
| 인테리어 분담 비용 | · 파트너사 이동 또는 면적 변경 시 새로 진행하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<br>「롯데 인테리어 비용 분담표」에 의거하여 일정 비율만큼 양사가 분담   |
| 인테리어 보상 비용 | · 롯데 사유로 파트너사의 영업 기대 일수(계약기간)을 보장하지 못했을 때<br>(파트너사가 이미 부담한)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감가 후 롯데가 파트너사에게 지급<br>* 단, 롯데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관련 파트너사 사유로 거래 중단 시 롯데가 보상 청구 가능 |

#### 3. 인테리어 분담 비용 기준 (롯데 인테리어 비용 분담표)

| ① 거래유형    |                 | ② 파트너사 규모 | ③ 매장이동이<br>파트너사에게<br>이익이 되는가? | ④ 롯데<br>분담비율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|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%         |
|           | 특약매입            | 8276      | 유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. ,=,,    |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 외    | 협의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계약기간 중 이동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이상       |
| 임대        |                 | _         | 유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υ         | 계약기간<br>만료 후 이동 |           |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    |

- ☑ 파트너사의 이동 또는 면적 변경 시, 상기 「롯데 인테리어 비용 분담표」 의거 신규 인테리어 비용 분담
- ☑ 롯데 사양의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롯데가 100% 부담 (단, 파트너사사양으로변경할 경우 파트너사비용부담)
- 🗹 매장 이동의 유/불리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
  - 면적 증감, 대면 증감, 접근성(트래픽) 개선, 가시성 개선, 동종/유사 상품군과의 거리 등
- ☑ 롯데-파트너사 상호 협의 시, 파트너사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파트너사가 롯데에 전달 필요
  - \* 필수 기재 사항: 이동 위치, 구체적 이동요청 사유, 인테리어 비용 부담의사 및 비율, 직인, 공문 발송일자
- 🗹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 전까지 인테리어 약정서 체결

# IV. 매장 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/보상 (매장운영 및관리)

#### 4. 인테리어 비용 보상 기준

- ☑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동 또는 퇴점 하는 경우, 대규모유통업자는 파트너사가 부담한 매장 설비비용 (당해 계약체결 시 또는 기간 중 시행한 인테리어)에 대한 보상금 지급 ※ 단, 2회차 이후 갱신계약 중 이동 또는 퇴점 시에는 보상 의무 미발생
- ☑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1년 기준으로 보상금액 산정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세부 내용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|
| 보상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 기대일수<br>1년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(인테리어 비용 – 재활용 집기 비용) X 영업 기대일수   |  |  |
| <b>산정방법</b><br>(VAT 제외)      | 영업 기대일수<br>1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(인테리어 비용 - 재활용 집기 비용) X 365 - 영업일수 * 2월 29일이 있는 윤년인 경우 366일   |  |  |
| 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!상 제외   | · 파트너사 자진철수, 브랜드 종료, 라이선스 종료 등  |  |  |
| <b>필수 서류</b><br>(파트너사→롯데 제출) |   | ① 파트너사와 시공사 간의 세금계산서  * 대체 증빙: 계좌이체 내역서, 금융거래 확인서, 입금확인증, 통장이체 내역 등 ② 최종 인테리어 내역서 (세금계산서 및 재활용 집기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용) ③ 인테리어 비용 보상 요청 공문  * 재활용 집기가 있는 경우, 재활용 집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(ex. 행거□□원△개, 마네킹◇◇원◎◎개등)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테리어 비용 · 파트너사가 신규 또는 이동 매장 인테리어 조성을 위해 투입한 설비비용 총액 |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재활용 집기</b> · 이동식 집기 또는 탈부착 가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집기      |   |  |  |
| 용어<br>설명                     | 보상 대상기간<br>및<br>영업 기대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계약기간 중 공사 진행으로 인한 보상]  |  |  |

<sup>\*</sup> 단, 롯데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관련 파트너사 사유로 거래 중단 시 롯데가 보상 청구 가능

## V. 판촉사원 파견 (매장운영및관리)

#### 1. 판촉사원 파견 관련 원칙

☑ 대규모유통업자는 파트너사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다만, 파견조건을 사전 서면으로 약정하고,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가능

※ [공정위 입장] 특약매입 상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소유이므로 인테리어를 시공한 파트너사는 계약상 매장의 정당한 사용권자는 맞으나 당해 매장이 법률상 파트너사 소유의 매장이라고 볼 수는 없음 (임대차 매장은 제외 - 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매장임)

#### 2. 판촉사원 파견 유형

공문 양식 참조

#### 세부 내용

- ① 롯데가 파견된 판촉사원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
  - 인건비, 식비, 교통비, 기타 상품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에 필요한 비용 등 롯데 부담
- ② 파트너사가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판촉사원 등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
  - 파트너사가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, 파견비용 내역,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시한 공문을 롯데에 전달
- ③ 파트너사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
  - 참고) 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예시 특정 전자제품의 기능, 와인 감별 및 보관기법 등

#### 3. 판촉사원 파견 약정서 체결 시 유의사항

| 구 분          | 세부 내용  |
|--------------|--|
| 필수 기재사항      | · 파견 인원수/장소/기간, 예상비용/산출근거, 예상이익, 비용부담 주체, 종사할 업무내용, 직인, 공문 발송일자  |
| 약정서<br>체결 방법 | <ul> <li>특약매입 거래계약서에 판촉사원 파견 관련 약정조건 정확히 기재 및 확인</li> <li>※실제 근무인원 외 과다한 인원 수 기재 금지</li> <li>원 계약서상 인원수를 초과하여 파트너사가 자발적으로 추가 파견하거나 매장 외의 장소<br/>또는 시간을 변경하여 영업을 실시할 경우, 별도 동료사원 파견 약정서 체결 필요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| · 임대차 매장의 경우, 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임차인의<br>매장이며,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해당 장소를 점유하고 자기의 사업장으로<br>인식하고 있음. 따라서 임차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파견 사원이 아님<br>(파견 관련 약정조건 기재 불필요)<br>※ 단, 출장판매 등 본매장 외 장소에서의 판매 시 별도의 동료사원 파견 약정서 체결 필요  |
| 비고           | * <u>외부행사 기간에만 입점하는 매장의 외부행사 진행 시 절차</u> - [ 특약매입 ] 별도 동료사원 파견 약정서 체결 필요하나 임시단기 또는 시험유치계약서 활용하여 계약 체결 시 판촉사원 파견 관련 특약이 해당 계약서 내에 이미 포함 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 내용으로 대체 가능 (단, 파견조건 인원 수, 파견 사유 등 명확히 기재 필요) - [ 임대 ] 단기 임대차 계약서 활용하여 계약 체결 시, 단기계약의 목적물 자체가 해당 임차인의 판촉사원 근무장소가 되기 때문에 별도 동료사원 파견 약정서 체결 불필요 |

### 4. 기타 주의사항

- ☑ 파견된 파트너사의 판촉사원은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/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업무에만 종사 가능
- 🗹 롯데는 판촉사원에게 판매목표를 부여하거나 매출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
- ▼ 롯데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유업무(휴게실 등 공용공간청소, 직매입/특약매입 재고조사 등)를 파트너사에 전가해서는 안 됨
- ☑ 롯데는 파트너사 판촉사원의 근태 및 휴게시간을 관리해서는 안 됨

# V. 판촉사원 파견 (매장운영및관리)

#### ■ 동료사원 파견 관련 파트너사 공문 예시

- ☑ 롯데 전자계약시스템(ECS) 가입자는 시스템상 공문 양식 활용 또는 참조 가능
  - \* 경로 : 공문서 > [공문] 공문서 작성(공개양식) > 공문명 인원 파견 양식 > 판촉사원 파견요청서(2호 사유)
- ☑ 파트너사가 롯데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판촉사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,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롯데에 서면 전달 필요
  - ▶ 파견기간이 22.7.1~22.7.14인 경우 예시

※ 필수 기재사항 :

TEL: 02)1234-5678 / FAX: 02)1234-8765

(우) 12345 ◎◎ 시 □□ 구 ##로 123

문서번호: 20XX-△△-◎◎-01 신 : 롯데백화점 〇〇점 수

참 조 : ◇◇팀 파트리더

제 목: ABCDE 대형행사 진행 관련 파견인원 근무 요청 건 2022. 6. 24

▶ 공문 발송일자

\* 파견시작일 D-7일까지 롯데에 전달 필요

- 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당사에서는 판촉사원 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조 요청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.

Γŀ 음

1 목 적: 000000000000000000 ▶ 파견 사유

2. 업무범위: 자사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▶ 종사할 업무 내용

3. LH 용

| 구 분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점포명   | 롯데백화점 〇〇점            | ▶ 파견 장소                 |
| 브랜드명  | ABCDE                | ▶ 대상 브랜드                |
| 기 간   | 2022.7.1 ~ 2022.7.14 | ▶ 파견 기간                 |
| 판촉행사명 | ABCED 브랜드 창고대개방      | 〇〇점 점행사장                |
| 파견인원수 | 5명                   | ▶ 파견 인원                 |
| 부담비용  | 7백만원                 | ▶ 예상 비용                 |
| 산출근거  | 일평균 10만*14일*5명       | ▶ 비용 산출근거               |
| 예상이익  | 15백만원                | ▶ <b>예상 이익</b> (예상매출 아님 |

4 부담주체 : 00000000000000000 ▶ 비용부담 주체

\* 파트너사 부담인 경우, 파트너사 부담임을 명시 ex) 파견인원 관련 제반 비용은 당사 부담

주식회사 FGHIJ사 영업본부장 김공정



▶ 직인

## VI. 반품의 기준 및 절차

#### 1. 반품의 정의 및 원칙

- ☑ [정의] 행위의 법률적 형식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당초 납품된 상품이 납품업자에게 되돌아간 모든 행위를 의미
- ☑ [원칙]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

#### 2. 거래형태별 반품행위 위법성 기준 적용 여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내용   |  |
|---|---|--|
| 직매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원칙적 금지 (단, 정당한 사유시 절차에 따라 예외적 허용)   |  |
| 특약매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해당 서면을 파트너사에 사전 교부시 반품 가능<br>(당사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서 반영) * 반품조건 : 대상, 시기, 절차, 비용부담등 |  |
| 임 대 · 반품 관련 법령규정 및 심사지침 미적용 (납품 행위 미발생) |   |  |

※ 위수탁거래 반품 가능

#### 3. 직매입 거래 반품 업무 프로세스



#### ① [상품검수/입고] 롯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거부/지연/납품취소/변경/대금감액을 해서는 안 됨

※ 매입 전 수령거부의 정당한 사유 발견 시

상품의 목록, 수량, 주문일자, 주문수량, 수령일자, 수령수량 및 수령 거부 또는 지체 사유가 적힌 서류 확인

- \* 정당한 사유 : 파트너사 사유 상품 오/훼손 및 결함, 주문(계약)한 상품과 다른 상품 납품, 납기일 미준수 등
- \* 파트너사 사유 상품하자 시 상태 증빙을 위한 사진촬영 필요

#### ② [반품의 정당한 사유 확인] 정당한 사유 예시

| 구분              | 세부내용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파트너사<br>사유      | · 파트너사 귀책사유로 인한 오염, 훼손, 하자가 있는 경우  | 납품일 기준<br>90일 이내 반품     |  |
|                 | · 납품한 상품이 주문(계약)한 상품과 다른 경우  | *신선농/수/축산물<br>납품일기준2일이내 |  |
|                 | · 파트너사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<br>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ex) 신/구 상품 교체, 시장테스트 상품 반품 등<br>*단, 파트너사는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롯데에 제출 필요 | 파트너사사전 요청시<br>상호협의      |  |
|                 | · 파트너사롯데가 협의하에 품질 및 성분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로 상품을 납품하였으나,<br>검사 결과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| 판정 결과 확인시<br>상호 협의      |  |
| 상호<br>합의된<br>사유 | ·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*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<br>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준 경우 (단, 신선 농/수/축산물 제외)   | 약정시 반품기한<br>특약사항으로 명시   |  |
|                 | · 반품으로 생기는 손실을 롯데가 부담하고 파트너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 | 사전 상호 협의                |  |

# VI. 반품의 기준 및 절차

#### \*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예시

| 기념일    | · 발렌타인데이 초콜릿, 화이트데이 사탕, 빼빼로데이 과자, 크리스마스 트리 등 |
|--------|--|
| 명 절    | · 추석 선물세트, 설 선물세트, 차례용품, 제기 등                |
| 신학기/졸업 | · 가방, 연필, 공책, 실내화, 교복, 꽃다발 등                 |
| 휴가철    | · 수영복, 튜브 등 물놀이용품, 스키복, 고글 등 스키용품 등          |
| 계절     | · 에어컨, 제습기, 선풍기, 히터 등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③ [정당한 사유 유형별 필요서류 구비]

| <br>구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내용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파트너사<br>사유      | 오염, 훼손, 결함 등 하자               | · 반품 사유/상품/금액 등이 명시된 반품요청 공문<br>· 반품대상 하자상품 사진촬영   |
|                 | 주문(계약)한 상품과<br>다른 상품 납품       | · 반품 사유/상품/금액 등이 명시된 반품요청 공문<br>· 주문(계약)한 상품과 상이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<br>- 원계약상품과의비교사진,계약사항과납품상품의제품특성(원산지/유통기한등)을 비교한서류 등 |
|                 | 파트너사에<br>이익이 되는 반품            | · 파트너사의 자발적인 판단 하에 반품이 파트너사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<br>객관적인 근거자료 ex)유해물질첨가상품의반품을통해 피해최소화, 파트너사판매채널변경등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법적기준 불합격 또는<br>부적합 판정 상품      | ㆍ불합격 또는 부적합 품질 및 성분 검사결과 관련 제반 서류  |
| 상호<br>합의된<br>사유 |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<br>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| · 해당여부는 월별/분기별 판매량, 매입량, 재고량, 소비자의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<br>·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반품으로 생기는<br>손실 롯데가 부담         | · 파트너사 사전동의 공문   |

#### ④ [상품 반품]

## VII.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

#### 1. 서면 교부 전 구두발주 금지

☑ 롯데는 파트너사에 사전 서면 교부 없이 납품할 상품을 제조/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
설비/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됨 (단, 사전에 롯데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가능)

#### 2. 계약서 사후 체결 및 지연 교부 금지

- ✓ 롯데는 파트너사와 사전 서면 약정(계약) 없이 거래/행사/공사 등을 진행하거나,진행한 후 서면 약정 사항을 교부해서는 안 됨 ★구두 합의 원칙적 금지
- ☑ 롯데는 파트너사와 계약 시,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계약시작일 이전에 계약 체결 및 즉시 교부해야 함
  (단. 파트너사 전자계약시스템 미가입 등 사유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류계약 체결 가능)
- ☑ 계약서 미체결시 영업/공사/행사진행 불가
- 계약 관련 주요 서류들은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

#### 3. 상품대금 감액 금지 및 미지급/지연지급 금지

- ☑ 롯데는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됨 (단,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/훼손/하자 등 제외)
- ☑ 롯데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(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 필요)

#### 4. 판매분 매입의 원칙적 금지

☑ 롯데는 고객에게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파트너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(판매분 매입) 해서는 안 됨
(단, 상품 특성 상 사전매입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 허용)

#### ◎ 예외적 허용 사유 (파트너사 사전 협의 필요)

| F&B (조리/델리 등)   | · 고객 주문 시 매장 내 조리 후 판매되는 구조로 사전매입 불가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|
| 대형가전(냉장고/에어컨 등) | · 주문 건에 따라 파트너사 직배송 및 제품 설치되는 구조로 사전매입 불가  |
| 기타              | · 파트너사 요청 (본사정책등)에 의한 경우 등 *공정거래팀 사전 검토 필요 |

#### 5. 상품 수령 거부/지체 금지

☑ 롯데는 파트너사와 납품에 관한 계약 체결 후 해당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됨
(단,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/훼손/하자 등 제외)

#### 6. 중간유통업체(벤더)를 통한 납품 유도행위 금지

- ☑ 롯데는 파트너사에게 중간유통업자(벤더)를 통해 납품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됨
- ☑ 롯데는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행위를 한 중간유통업자(벤더)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 가능

## VII.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

#### 7.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

☑ 롯데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(임차료 포함) 등 경영정보에 대해 부당하게 파트너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됨

#### ◎ 법에서 금지하는 경영정보란?

- 1)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 등 공급조건 (마진율, 계약기간 등)
- 2)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하기 위한 입점조건 (임대료, 계약기간 등)
- 3)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
- 4)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매출액,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정보
- 5)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시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(시기, 횟수, 거래조건 등)
- 6) 파트너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 사용하는 전산망의 접속정보 (ID / PW 등)
- ☑ 파트너사에게 추가적인 불이익 제공행위가 없더라도 롯데가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
- ☑ 롯데는 입점 상담 단계에서 파트너사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됨
- 물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롯데가 파트너사에 필요 최소한의 경영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, 하단 내용 포함 서면 요청 필요
  - 1)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
  - 2)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
  - 3) 경영정보 요구일자,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
  - 4)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

#### 8. 배단적 거래 강요 금지

☑ 롯데는 부당하게 파트너사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게 하거나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됨

#### 9.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

☑ 롯데는 파트너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/물품/용역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

#### 10.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

☑ 롯데는 매장임차인의 질병 등의 사유로 파트너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해서는 안 됨

#### 11. 보복조치 금지

✓ 롯데는 파트너사가 신고 또는 분쟁조정신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파트너사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,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

## VII.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

#### 12. 불이익 제공행위금지

- ☑ 롯데는 파트너사에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해서는 안됨
- 🗹 롯데는 파트너사에 통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해서는 안 됨
- ☑ 롯데는 파트너사에 판매촉진행사를 위해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해서는 안 됨
- 🗹 롯데는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됨
- ☑ 롯데는 파트너사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해서는 안 됨
- ☑ 롯데는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됨
- ☑ 롯데는 파트너사가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해서는 안 됨
- ☑ 롯데는 계약기간 중에 파트너사 등의 매장 위치 · 면적 · 시설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됨
- ☑ 롯데는 계약기간 중에 마진율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됨
- ☑ 롯데는 이에 준하는 파트너사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됨
- ※ 상기 파트너사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대규모유통업법 외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따름

#### [불공정 거래 관련 제보 채널]

- 1. 온라인 신고 : 롯데백화점 홍보관 > 사회적책임 > 컴플라이언스 > 인터넷신고 또는 MD본부 홈페이지 > 파트너사 지원 > 불공정 거래 신고
  - \* 사이트 주소: 환경·에너지경영 > 사회적책임 > 롯데 홍보관 (lotteshopping.com)
- 2. 우편신고: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공정거래팀
- 3. 유선신고: 02-2118-5283 ~ 5287